이천시읍·면·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
   ○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.

2. 근거 법령
   ○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(도지사 승인)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경계변경 승인(2003.5.13)

3. 제안 이유
   ○ 갈산동 일부 14필지 16,641㎡ 및 증포동 일부 5필지 14,346㎡가 창전동으로, 신둔면 도암리 일부 64,836㎡가 송정동으로 편입됨에 따른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 골자
   ○ 이천시 갈산동 604-1번지 일원 14필지 16,641㎡를 창전동으로 변경.
   ○ 이천시 증포동 140번지 일원 5필지 14,346㎡를 창전동으로 변경.
   ○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709-3번지 일원 91필지 64,836㎡를 송정동으로 변경.

5. 검토 의견
   ○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경계지역을 조정하고자 읍·면·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갈산동 일부(14필지 16,641㎡)와 증포동 일부(5필지 14,346㎡)를 창전동으로 변경하고, 신둔면 도암리 일부(91필지 64,836㎡)를 송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